

광고잡지의 제호 옆에 시의 문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당해 시가보유하고 있는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ssen 지방법원 1989.2.27.판결 -80608/88 사건 -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12 조

판결요지

광고잡지의 제호 옆에 시의 문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당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몇개의 광고잡지를 편집 및 판매하고 있는 바, 위 잡지는 각각 특정의 시 또는 구에서 판매되고 있다. 원고가 살고 있는 시의 지역에서는 「Stadtspiegel Marl」이라는 잡지가 간행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1987. 4. 30. 이래 위 잡지 표지의 「Stadtspiegel」이라는 이름 옆에 원고 시의 문장을 인쇄해 왔었다. 1988년 4월에 다른 출판회사가 그의 광고단지에도 역시 위 시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원고에게 신청하였으나,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어서, 「Stadtspiegel」잡지에 원고 시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잡지의 표지에 원고의 문장을 계속해서 사용하자원고는 독일민법 제 12 조를 원용하여 시문장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시문장의 사용은 시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시의회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원고는 1987년 10월에 피고에 대하여, 위 신문장의 사용으로 인하여 위 잡지와 원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광고잡지에 게재된 상업적인 광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위 지방의 생활에 관계되는 지역정보는 위 「Stadtspiegel」에 의하여 공고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주간광고잡지 「Stadtspiegel」의 제호부분에 Marl 시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판결이유

이 사건 소는 이유 없다.

독일민법 제 12조를 근거로 하는 피고에 대한 중지청구권은 원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Stadtspiegel Marl」 잡지의 표지에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문장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장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잡지의 제호 옆에 위 문장을 인쇄하였다고 하여 그 문장을 사

용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보유자로서의 원고에 대하여도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문장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이 「문장」을 그 잡지의 표시로 이용함으로써 위 문장이 피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 문장은 피고의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광고잡지에 있어서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지 그 잡지의 발행지 및 그 정보와 광고가 관계를 가지는 지역적인 범위를 표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위 잡지에 문장을 표시한 것은, Marl 시의 이름과 문장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지 이에 반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이다. 즉, 위 문장은 자치단체 및 문장의 보유자로서의 원고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문장의 보유자로서의 원고가 「Stadtspiegel」 잡지의 배후에 있어서, 원고가 위 잡지의 내용과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관계에 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1988. 11. 24 자 위 잡지에 원고의 회견내용이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보도된 것을 보아도 위와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위 보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편집에 의한 보도인 것 같은 인상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의 문장을 모사하여 사용된다고 해서 원고의 문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님은 다음의 점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즉 원고는 약 1년 동안 위 문장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묵인해 왔으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잡지의 독자들로부터 위 잡지 또는 위 잡지의 내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왔다는 불평을 들어 본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